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2항 제2호중 '매각'을 '사용허가'로 하고 제11조 제3항 제1호중 '직할시이상 지역'을 '특별시·직할시지역'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중 '3백만원'을 '1천만원'으로 한다.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3조(사용허가 기간) 행정재산의 사용허가기간은 3년이내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계속 사용허가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그 기간만료 1월전에 3년 이내의 기간으로 하여 갱신허가 하여야 한다.

제22조중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2호를 삭제하며 제4호 다음에 제5호 내지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39조의 2 제1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하는 재산으로 일시에 전액을 납부허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천재·지변·기타 재해 또는 매수인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불가항력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
6. 도의 필요에 의하여 매각재산을 일정기간동안 도가 계속하여 점유사용할 목적으로 재산·명도일과 매각대금의 납부기간을 계약시에 따로 정하는 경우와 계약시에 재산명도일을 연장하는 경우
7. 도시재개발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개량 재개발구역안에 있는 토지중 도지사가 도시재개발법의 규정에 따라 재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유건물에 의하여 점유·사용되고 있는 토지를 재개발사업 시행인가당시의 건물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제23조 제1항 단서중 '재마을사업에'를 '취락개선사업에'로 하고 제2항중 '농지소득 금액의 1,000분의 150 또는 토지 과세시가표준액의 1,000분의 25중 저렴한 금액으로 한다'를 '농지소득금액의 1,000분의 50 또는 토지 과세시가표준액의 1,000분의 8중 저렴한 금액으로 한다'로 한다.

제2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8조(대부료등에 대한 연체요율) 대부료 및 사용료, 매각대금, 변상금을 납부기간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연체요율은 연 15퍼센트로 한다.

제39조의 2중 '영 제95조 제2항 제24호'를 '영 제95조 제2항 제25호'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